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내복귀기업 정의 및 지원대상 선정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폐지 등〉
■강민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01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내복귀기업 정의 및 지원대상 선정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폐지 등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17.
3. 회부연월일 : 2025. 4.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국내 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감면, 금융지원, 보증·보험지원, 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면역 관련 사업을 해야 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해야 하며,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복귀하면 조건 없이 지원하거나 기준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일본, 미국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실제 2022년도에는 22개 기업만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

되었으며, 지난 5년간 신용보증기금의 국내복귀기업 일반보증 지원 수도 21개 기업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제4호, 제7조 및 제15조).

Ⅲ. 검토의견

1. 국내복귀기업 정의 및 지원대상 선정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폐지 등

개정안은 국내복귀 및 국내복귀기업의 정의규정,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 국내복귀계획서 제출내용 및 관련 절차·규정, 지원사항 등에서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이하 “구조조정”) 요건을 삭제하고,

해외사업장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장을 국내에서 신·증설 하는 경우 모두 “국내복귀”로 보아 보다 폭넓게 지원대상을 선정·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제4호, 제7조 및 제15조).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국내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3. -----대통령령으로----- ----- ----- -----

현행	개정안
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가. <u>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할 경우</u> 나. <u>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4. “국내복귀기업”이란 <u>다음 각 목의 기업</u>을 말한다. 가. <u>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u> 나. <u>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u>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생략) 2. <u>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u>	----- -----. <삭 제> <삭 제> 4.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삭 제> <삭 제>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u>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u> 3.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략) 2. <u>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를 완료할 것</u> 3. <u>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것</u>	3.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u>국내사업장</u>----- ----- 3.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u>해외사업장의 청산</u> <u>· 양도 또는 축소, 국내사업장의 신</u> <u>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이나 그</u> <u>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u> <u>변경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u> <u>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⑤ ----- ----- <u>국내사업장</u> ----- ----- ----- -----.
제15조(<u>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u>)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 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위하여 <u>해외</u> <u>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u> <u>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u> <u>수 있다.</u>	제15조(<u>국내복귀 지원</u>) ----- ----- ----- <u>국내복귀</u> ----- -----.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구조조정하거나(제2조제3호가목), 첨단산업제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3호나목) 해외에서 추가로 생산·공급하는 대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것을 “국내복귀”로 정의함.

[표 2] “국내복귀” 정의규정

3. “국내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u>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할 경우
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시행령 제3조(사업장의 신설·증설 등)

** 제3조의2(첨단산업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기술, 첨단기술, 국가전략기술 활용제품등

그리고 “국내복귀기업”(제2조제4호)은 이미 신·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직 국내복귀가 진행 중이더라도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국내복귀 진행기업)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정의규정 등에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삭제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구조조정 진행 여부, 첨단산업·공급망 안정 여부 등과 같은 사유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해외에서 제품·서비스를 추가로 생산·공급하는 대신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증설하여 생산·공급하는 모든 경우를 “국내복귀”로 정의하고자 함.

이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유사 제품·서비스 생산시설을 국내에 신·증설하기만 해도 동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고, 조세감면, 보조금, 입지지원 및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표 3] 현행법상 국내복귀기업 지원 조문

조문번호	조문내용
제11조	조세감면
제12조	자금지원
제12조의2	생산성 향상지원
제12조의3	연구개발지원
제12조의4	시장개척지원
제13조	입지지원
제13조의3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4조	인력지원
제15조	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제16조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6조의2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우선·추가지원)

즉, 개정안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첨단산업·공급망 안정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국내사업장 신·증설시 조세감면, 보조금, 입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투자유치를 확대하고자 함.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구조조정하고 국내에 복귀하는 경우 각종 자산 처분 손실, 국내외 신뢰도 하락 등 유·무형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그러한 부담없이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조세감면, 보조금, 토지매입·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므로,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으로 신청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는 2013년에 일자리 창출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리쇼어링(Reshoring)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구조조정하는 경우에 한해 도입되었고, 2020년 12월¹⁾에 첨단산업 일자리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과 기존 국내기업 간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므로 기존 국내기업의 사업장 신·증설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 국내복귀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등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현재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수는 148개(2025. 4월말 기준)인데 해외진출기업은 9,930여개²⁾ 이상이고,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해외진출기업에게 지원기회가 부여되므로 재정적 여건 및 정책지원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도 집행하고 있는데, 해당 보조금의 지원목적

1)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31호, 2020. 12. 22., 일부개정]

2) - KOTRA가 80개국 125개 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 정보제공에 동의한 기업만 포함함.
- 2024년 6~9월 조사

자료: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1350

및 방법 등이 개정안에 따른 국내복귀보조금과 유사·중복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56